

보도자료

2010년 6월 14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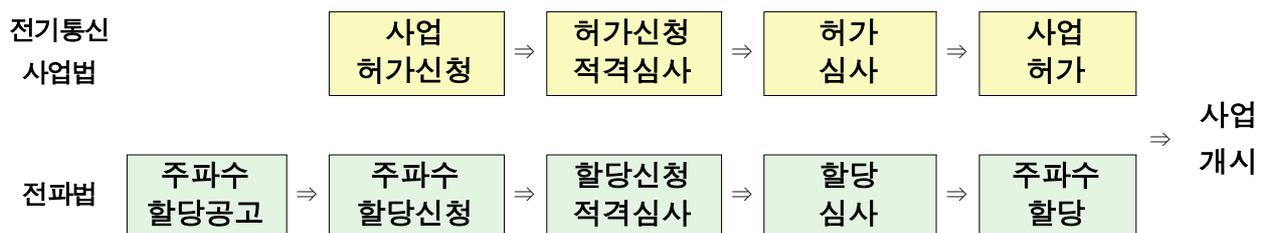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최영진 과장 (☎ 750-2530)
통신경쟁정책과 윤태섭 사무관 (☎ 750-2531) nikkol@kcc.go.kr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 (☎ 750-2270)
주파수정책과 오형근 서기관 (☎ 750-2271) philos@kcc.go.kr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0. 6. 11(금) 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의 WiBro(휴대인터넷)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모바일인터넷이 WiBr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업무 허가와 WiBro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업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주파수할당 심사 절차>



붙임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관련 조항. 끝.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관련 조항

사업법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3. 재정 및 기술적 능력
4. 제공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5. 기간통신역무와 관련된 기술개발계획
6.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법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사업법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법 시행령 제9조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9조(허가신청적격 여부 결정) ①방송통신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이 적합한지 여부(이하 "허가신청적격 여부"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결정할 때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공공의 이익, 「전기통신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사업법, 「전파법」 및 이 고시 등 관련규정에의 적합여부, 사업법 제5조의2 및 제6조의 허가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할당 공고 여부 및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성궤도등의 할당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허가신청적격 여부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할 때 역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제14조(심사결과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된 허가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기본법 제44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전파법 관련 조항

전파법 제10조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1.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전파법 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전파법 시행령 제11조 (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